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5 . 14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5. 28 .
- 다. 상정일자 : 1999. 5. 28 제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 제 안 이 유

- '99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중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이 10,000원 이하의 제한세율로 변경되어 군세조례도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징세비용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 현행 2기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동차세 부과·징수제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회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며,
-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의 과표와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  
(안 제20조)
- 나.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의 과표와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  
로 조정하여 세율인하
- 다. 자동차세 납부제도중 년4회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 4. 검토 의견

- 개정전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주민세 표준세율인 1,000원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가감조정하지 않고 일정금액 1,000원을 현재까지 부과하였음.
- '98.12.31일자로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동조동항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은 5,000원을 과액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현행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의 과표와 세율이 현행 7단계로 되어 있으나 5단계로 조정함과 동시에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2,000CC이하는 CC당 20원을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0CC초과는 CC당 적게는 30원에서 많게는 15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중형자동차가 인하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형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외국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향후 군재정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종전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는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었고 신고납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았으나 '98.12.31일자로 년4회 분할납부와 신고납부 기간을 명확히하게 동법동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기타 자구등에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